위원회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1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3년 8월 25일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일자: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2023. 9. 11.)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 제안이유

운영(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비효율 위원회를 통폐합 또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 및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1조)
- 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비상설화 규정 삽입(안 제2,3,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 다. 합 의: 관련 부서 합의(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7. 12. ~ 8. 1.) 결과: 의견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3) 규제사전심사 결과: 해당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수용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제7조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제9조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안」제12조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시 성별균형을 고려할 것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장석현)

- 본 개정안은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 또는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보다 내실화된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 이번 개정을 통하여 기존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폐합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실적인 관리 및 운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자치법규 개정 시에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법규들이 관련성을 가지고 공통의 개정 목적이 있으므로 경제성·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일괄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생략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 붙임 관계 법령 1부.

¹⁾ 일괄정비 방식의 조례 정비는 개별 자치법규의 본원적 내용에 대한 침해 없이 <u>비교적 단순한 제명,</u> 조문 변경 등의 사항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법규 서비스 접근성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음. 관련성이 있는 자치법규를 각각 별도의 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하면 조례 개정의 시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한 시행상의 혼란이 초래됨. 그리고 별도의 입법 절차로 인한 비경제정·비능률성을 야기함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 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 • 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 ·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 운영해서는 아 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 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